

#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(안)

제정	1984. 3. 01.
제25차 개정	2006. 3. 18.
(제26차)전면개정	2021. 3. 01
제27차 개정	2021. 8. 01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교는 초·중등교육법 제45조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·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본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”)을 제정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교는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라 칭한다.

**제3조(위치)** 본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낙현길 17-14에 둔다.

## 제2장 수업연한·학년·학기 및 휴업일

**제4조(수업연한)**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학년제)**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.

**제6조(학기)**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7조(휴업일)**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
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국경일, 공휴일
2. 개교기념일 (12월 4일)
3. 하계휴가 :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.
4. 동계휴가 :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.
5. 학년말 휴가 :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.
6.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

② 제1항의 3, 4, 5호 휴가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제3장 학급편제·학급수·학생정원

**제8조(학급 편제)**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,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.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. 또한, 교육감이 정하는 특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.

**제9조(학급수·학생정원)**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

하는 자는 학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① 유급생
- 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
- ③ 재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
- ④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
- ⑤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

## 제4장 교과·수업일수·교사·교외체험학습

**제10조(교육과정)**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**제11조(수업 운영 방법 등)**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-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-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류·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**제12조(교과)** 국어, 도덕, 사회, 수학, 과학, 기술·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,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

**제13조(수업일수)**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

- ② 다만, 천재지변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-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.
- ④ 재입학·편입·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(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).

**제14조(교외체험학습)**

-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(1개월 이내), 단체교환학습은 (2주 이내)로 한다.
-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(30일 이내)로 하며,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(10일 이내)로 한다.
- ③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(15일 이내)로 사용가능하며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경계'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하여 연 (30일 이내)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사용할 수 있다. (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)
- ⑤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
- ⑥ 교환학습(개인,단체)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→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→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→ 교환학습 실시→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→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.
- ⑦ 교외체험학습은 학생·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(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경계'단계의 경우

전일)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이후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하며,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. 단,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.

1.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

⑧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,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.

⑨ 가족동반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·견학활동,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'심각,경계'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.

**⑩ (체험학습 불허 사항)**

1.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

2.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

3.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

4.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
**⑪ (미인정 결석 처리)**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

1.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

2.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

3.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

4.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

**제15조(교과학습 평가)**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② 평가의 영역, 방법, 횟수, 반영비율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.

③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.

## 제5장 입학·재입학·편입학·전학·휴학·퇴학·수료 및 졸업

**제16조(입학 시기)** 입학,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
**제17조(입학 자격)**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

②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

**제18조(입학전형방법)** 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며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(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)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으로 하되,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.

**제19조(재입학)**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 이하 학년에 한한다.

**제20조(전·편입학)** ① 학교의 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, 전문계고등학교, 예·체능계고등학교, 특수목적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.

③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과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7조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·전학 및 편입학 할 수 있다.

④ 본교의 전·편입학 및 재입학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전·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.

**제21조(입학 서류)**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전·편입학 서류)** ① 전·편입학하려는 자는 전·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원 재적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,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,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보조부 원본을 원 재적교에서 이송 받아야 한다.

**제23조(휴학)**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휴학원을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.

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하여 복학을 원할 경우 보호자 연서로 복학원을 출원하여 복학하며, 복학 시기는 제24조 제2항의 출석일수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
**제24조(자퇴)**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, 이후 절차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.

**제25조(수료 및 졸업)**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한 결과로 정한다.

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.

##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

**제26조(조기진급·조기졸업)** ① 학교의 장에 의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정의 평가 과정을 거쳐 조기 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.

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진급 할 수 있다.

③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.

**제27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선정 시기)**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. 단,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.

**제28조(선정 대상자 기준)**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①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석차등급에 이수 단위수를 반영한 석차백분위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입학 배정 인원의 5% 이내이고(단, 전북과학고는 20%이내인 자), 교과목(이수한 단위 수 기준)의 80% 이상 학업성취도가 A인 자.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 단, 과목 성취도가 등급이 아닌 경우(예: 예체능)는 제외함.

-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(IQ)가 140 이상인 자
- ③ 국가기관(중앙행정부처)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,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

**제29조(조기 진급 환원 조치)**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.

**제30조(교과목별 조기 이수 학력 인정)**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한 자는 본교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.

**제31조(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)**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(3월 말) 이내에 한다.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(4월 말) 이내에 한다.

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(이하 “조기진급·졸업대상자”라 한다)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.

④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
⑤ 조기진급·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

**제32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세부사항)**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**제33조(졸업장)**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.

## 제7장 수업료·입학금·기타 비용 징수

**제34조(수업료 등)**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·입학금·기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‘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’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.

③ 기타의 비용(급식비, 기숙사비, 현장체험학습비, 방과후교육비 등)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.

**제35조(수업료 등의 감면)**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, 특기 신장이나,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.

**제36조(체납자 조치)**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 기일이 경과한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.

## 제8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

**제37조(학생 포상)** ① 학교장은 교과목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, 성실하고 근면성이 뛰어난 자, 선행과 효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, 예·체능 또는 특기가 뛰어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② 학생 포상의 종류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8조(학생 징계)**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.

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② 훈육·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, 격리조치, 상담활동, 학습활동, 봉사활동,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훈육·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·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③ 지도교사(담임교사, 교감, 교장 등)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, 훈계,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.

④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.

⑤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.

⑥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.

⑦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⑧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정한다.

## 제9장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

**제39조(학생회의 조직)** ①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, 전체 학생회로 구분하여, 각각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급학생회(이하 학생회),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(이하 학생회)라 한다.

②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
③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④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학교 생활(교과활동, 학교행사, 학생 간 갈등 및 분쟁, 환경미화, 학생복지, 기타)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

2.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, 예술, 체육, 취미, 봉사 활동

3.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달

4.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·복지·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

5. 학생회 운영

6.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7.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
**제40조(학생회의 운영)** ① 학생회 활동은 학생의 자율적,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.

② 학생회 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.

③ 학생회 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한다.

**제41조(학생회 활동규정)** 학생회의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.

## 제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
**제42조(출결사항)**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,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.

-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  - 1. 천재지변, 법정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- 2.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- 3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
  - 4. 전출·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
  - 5.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  - 6.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
  - 7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- ③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지각’으로 처리한다.
- ④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‘조퇴’로 처리한다.
-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결과’로 처리한다.

**제43조(경조사 출결)**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단,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,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.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○ 형제, 자매, 부, 모	1
입 양	○ 학생 본인	20
사 망	○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
	○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	3
	○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3
	○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1

**제44조(결석의 종류)**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: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
- ②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: 태만, 가출, 고의적인 출석 거부, 미인정 어학연수 등
- ③ 기타 결석
  - 1.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(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)
  - 2.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
  - 3.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

**제45조(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·운영)**

- ①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·운영한다.
- ② 학생폭력전담기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- 1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·추진
  - 2. 피.가해 사실 여부 확인
  - 3.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,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등
  - 4.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의뢰(심의위원장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)
  - 5.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·운영

- 6.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에 대한 지도 및 지원
- 7. 각종 관계회복 프로그램 구성·운영
- ③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운영계획에 따른다.

## 제11장 장애인 차별 금지

- 제46조(차별금지)**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,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,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·실습, 현장견학,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·배제,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,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, 특수교육 교원, 특수교육보조원,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47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**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.
1.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
  2.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
  3.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

**제48조(개인정보보호)**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,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·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.

**제49조(문화·예술활동의 차별금지)** ① 장애인이 문화·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50조(체육활동의 차별금지)**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51조(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)**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## 제12장 학칙 개정

**제52조(학칙 개정절차)** ①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

② 학교생활규정의 제·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제·개정 사항을 자문한다.

**제53조(시행규칙)**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·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기타 지침,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## 부칙

1.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.
3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1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2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3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4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5. 1999년 9월1일 교명 변경으로 한남여자고등학교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로 정정한다.
16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7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8. (시행일)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9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0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22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3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4. (시행일) 이 학칙은 대통령령 제18282호('04.02.17)에 의거 시행한다.
25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26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7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대조표

개정전(2006. 3. 18. 시행)	개정후(2021. 3. 1. 시행)
제25차 개정 2006. 3. 18.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	학교교육과-16459(2020.11.6.) 공문에 의거 상기와 같이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을 전면개정함.
개정전(2021. 3. 1 시행)	개정후(2021. 8. 1 시행)
제52조(학칙 개정절차) ①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. ② 다만,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,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	제52조(학칙 개정절차) ①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 ② 학교생활규정의 제·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제·개정 사항을 자문한다.